

## 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210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5 월 18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지실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, 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현지실사를 방해·기피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(안 제6조제2항)

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도

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

나. 해외작업장 등록 시 현지실사 근거 규정 명확화(안 제12조제2항)

등록되지 않은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현지실사 할 수 있도록 개정

다.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범위 명확화(안 제38조제4항)

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, 수출제조업소 및

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

## 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주소 : (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)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(전화 : 043-719-2162, 팩스 : 043-719-21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거부하거나”를 “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등록된 해외작업장”을 “해외작업장”으로 한다.

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의 국내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수출하려는 자의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모니터요원”을 각각 “정보수집요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모니터링”을 “정보수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모니터요원”을 “정보수집요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2조(해외작업장의 등록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·확인을 위하여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38조(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조(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해외작업장의 등록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해외작업장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8조(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의 국내 안전관리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수출하려는 자의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</u></p>

제39조(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(생략)
2.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모니터링

3.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해외 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9조(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) ① -----  
-----  
----- 정보수집요원-----.

② ----- 정보수집요원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정보수집

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정보수집요원-----  
-----  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2